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 근거 마련 등 >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7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 근거 마련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정보습득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에 문제는 없으나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거공보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발달장애인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여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작성 근거 마련 등(안 제65조제4항 등)

개정안은 후보자가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제작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 ----- ----- ----- ----- ----- ----- ----- ----- <u>있으며, 시각장애 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 등(이하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라 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u>

⑤ ~ ⑦ (생략)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 5. (생략)

⑨ ~ ⑭ (생략)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생략)

⑧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 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있다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하고,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을 선거공보에 포함하여야 하

며-----점자형

선거공보 및 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에-----

-----.

1. ~ 5. (현행과 같음)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은-----

-----.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⑨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생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 7. (생략)

④ (생략)

-----.

⑨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점자형 선거공보와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및-----

3.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 외에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선거인이 아닌 장애선거인은 여전히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않아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제작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각장애선거인 이외의 장애선거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등의 제공을 통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 이외의 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

1) "'선거의 계절' 와도 장애인도 투표 못한다" 시사주간 2021. 4. 2.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35>

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의 “이해하기 쉬운”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임.

선거공보나 선거공약서는 후보자 정보, 선거공약이나 이에 대한 추진계획 외에 국정철학,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지지호소, 투표참여권유 등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하더라도 장애인선거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 및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의 제작에 더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 등의 제작으로 개정안에 따른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99억 6,3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2026 (지선)	2027 (대선)	2028 (국선)	2029	2030 (지선)	합계	연평균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안 제121조제3항)	4,404	129	613	-	4,817	9,963	1,993

주: 1.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안 제65조제4항)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선거공보 내용을 수어통역사가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일반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보다 2배 많은 것으로 가정)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에 대해서도 알 권리를 제고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청각장애인이 문맹률이 높다는 실증적 연구와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후보자 수가 많은 지방선거의 경우 국내 전문인력의 규모 등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을 아울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